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
----------	-----

발의연월일 : 2004년 10월13일

발 의 자 : 이필용의원의 6인

###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성과를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직무관련 소관 성과중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추가
- 관광건설위원회 직무관련 성과중 바이오산업 추진단 추가
- 특별위원회 설치 등 일부조항에서 "본회의의" 의결이나 "도회의의" 의결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비(제7조)

###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중 “총무과”를 삭제하고 다목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바이오산업 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본회의의”를 “본회의”로, “의결로서”를 “의결로써”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중 “도의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기획행정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공보관실, <u>총무과</u>,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한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lt;신 설&gt;</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lt;신 설&gt;</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기획행정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u>기획관리실</u>,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한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바이오산업 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u></p>	<p>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p> <p>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본의</u></p> <p><u>회의 의결로서</u>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p> <p>건이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p> <p>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p> <p>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p> <p>경우에는 <u>도의회</u>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p> <p>정 할 수 있다.</p>	<p>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p> <p>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본</u></p> <p><u>회의 의결로써</u>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p> <p>건이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p> <p>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p> <p>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p> <p>경우에는 <u>본회의</u>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p> <p>정 할 수 있다.</p>	